

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51조, 제52조,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『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』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26일

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

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가. 용역사업의 집행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

나. 용역사업의 개요

용역명	용역사업 주요내용	용역금액 (용역기간)	입찰예정 시기	비고
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	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3,000m ³ /일	2,973백만원 (VAT 포함) (31개월)	2026.09.	

※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, 출장여비, 도서인쇄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580호)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,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반영

※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하며, 용역비, 용역기간,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도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2.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

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법 제4조, 제9조) 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나.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『안전·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』 및 『안전보건관리계획서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

다.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『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』와 『안전보건관리계획서』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.

3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

가. 공고일 현재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·사업관리(일반분야, 건설사업관리분야)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

나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

다.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

라.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(공동이행, 분담이행, 공동이행+분담이행)으로 참여 가능하며,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되, “가”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자로 “나”항의 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각 공종별 참여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과업별 분담비율	계	건설분야	전기분야
	100 %	94.5%	5.5%

라. 『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』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【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(2025.12.01.)】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(가점)을 적용하며,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계열회사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)가 아니어야 합니다. 「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공동 도급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%이상 권장함. 이 경우 평가대상 기술인을 지분율대로(전체 백분율의 ±10% 이내 조정가능)배치하여야 합니다.

4.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

가.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나목의 [별표3]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.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.

※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.

나. 낙찰자선정은 『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』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【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(2025.12.01.)】에 준합니다.

※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'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평가'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(1점)를 모두 부여함.

5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

가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: 2026.09.04.(금요일) (13:00~17:00)

나. 등록 및 제출 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

다. 제출방법 : 직접제출(방문접수), 전자문서

※ 우편, 팩스, 퀵서비스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하며,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라. 제출서류 : 1)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

2)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(원본 1부, 사본 1부, USB 1개, CD1개)

3) 업무수행계획서 8부(원본1부, 사본7부,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)

마. 등록구비서류 : 대리참석시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인감지참), 법인등기부등본,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 사본,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협정서

※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(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) 받아 사용

바.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일정 : 추후 개별 통보

6. 기타사항

가. 참가등록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,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【등록구비서류 :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사본,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 사본,

법인 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사용인감계(인감지참), 공동도급협정서(공동도급시), 위임서는 위임장, 재직증명서】

- 나. 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,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평가서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,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.
- 라.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.
- 마. 본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며,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바.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한 기술인수, 착수일자 및 과업기간은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사. 본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,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, 낙찰 무효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.
- 아.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(충점)하며,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(단, 면접평가는 이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)
- 자.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의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(발주기관 포함)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,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낙찰사실을 우리 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.

※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,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 단,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도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, 경력 및 실적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도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,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- 차.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.
- 카.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간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- 타.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.
- 파.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·지방계약법, 기술용역입찰유의서, 기술용역계약일 반조건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,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 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(☎064-750-795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전·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

○○○○○○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도·수급(수탁)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○○○○○○는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.
2. 매년 안전·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·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(유해·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, 산업·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, 대피훈련 등)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·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.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(시민)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3.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·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,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.
4.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○○○○○○는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주 소 :

기 관 명 :

대 표 자 : 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귀하